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2024.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4-27
----------	-------

2024. 2. 28.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자원순환과)
- 나. 제 출 일 : 2024. 2. 16.
- 다. 회 부 일 : 2024. 2. 20.

2. 제출이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용량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작 중단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수료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3. 10. 26 ~ 2023. 11. 15.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규제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의 규격사항과 수수료의 변동사항을 혼용없이 사용하도록 과거 개정 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별 일반주택 및 사업장으로만 구분하는 등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불필요한 표기 사용을 삭제하고 현행 금액만 표기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이는 자치법령의 규율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고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활동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관 계 법 령]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④(중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